

##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5. 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 제정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해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환경기본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골자

- 시의 모든 시책은, 본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시행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내지 제8조)
-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시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UN에서 권고하는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제정 후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것인가?	○ 본 조례는 환경부의 준칙안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만 제정하는 것이며, 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것임
○ “지역의제21”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제정하는 것인가?	○ 그렇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정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해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환경기본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골자

- 시의 모든 시책은 본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시행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내지 제8조)
-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시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UN에서 권고하는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배려의 원칙
5. 오염자부담의 원칙
6.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과 동반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수립 지침)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공공시설과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의 규정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조사 및 체계적관리) ①시장은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의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민, 시민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관계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기술자 양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

제19조(시민참여 등) ①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시는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21」을 시민·사업자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한다.

제20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1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제39편 환경 제2장 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법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

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하는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정책 추진 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환경보전정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 12. 3>

제9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